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10월분)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초안 예고>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 ‘키토산’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 초안 공고 (「由蝦、蟹殼及黑麴菌絲體所製取之食品原料『幾丁聚糖(Chitosan)』之使用限制及其標示」)

○ 공고 기관 : 위생복지부 (衛生福利部)

○ 공고 및 시행 일자 : 2018년 10월 4일 / 2019년 7월 1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項) 제10항(款)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902號

○ 공고 내용 :

1.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 ‘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기 규정 초안
3. 본 규정 위반 시 NTD3만~300만圓 벌금 처벌 가능

<새우, 게딱지,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식품 원료 ‘키토산’의 사용제한 및 표시 초안>

관련 규정	규정 설명
1. 본 규정은 식품안전 위생 관리법 제15조-1, 제2항(項) 및 제22조 제1항(項) 제10항(款) 규정에 의해 지정함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흑곡균사체(<i>Aspergillus niger</i> mycelium)에서 추출한 오크라톡신 A (OCHRATOXIN A)의 함량은 1ppb 미만 이어야 함	흑곡균사체에서 추출한 키토산의 오크라톡신 A의 제한량
3. 새우, 게딱지 및 흑곡균사체 등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시에는 제품 외포장에 [만성병 약물을 복용 중 일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십시오] 및 [임산부, 수유기 부녀 및 영유아 식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새우, 게딱지 및 흑곡균사체 등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식품 원료로 사용 시 제품 외포장 경고문 표기 규정

- 연구조사에 의하면 키토산 성분은 만성병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산부 복용 시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제한량을 규정하고, 포장 라벨링 경고 표기 규정을 의무화 함

<시사점>

- 키토산 성분에 대한 신규 제도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對대만 관련 상품 수출 시 신규 규정에 대한 사전 숙지 및 주의가 필요함

* 자료원 :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2018.10.04 공고 / 자유시보(自由時報) 2018.10.04.

□ <초안 예고>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는 식품 용도 시 정부증명서 제출 규정] 초안 발표

(「輸入產品、乳製品及明膠及其衍生物、其他動物膠與消化蛋白質及其衍生物產品供食品用途，應檢附官方證明文件之規定」草案)

○ 공고 기관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8년 10월 26일

○ 실행 일자 : 2019년 3월 1일

○ 근거 법규 : 行政程序法 제159조 제2항 제2호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제4조

○ 공고 번호 : FDA食字第1071303013號

○ 공고 내용 :

1.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가 식품 용도로 사용되어질 경우 수출국 정부의 식용 가능 증명서 또는 수출국 식품안전 위생관련규정 등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접수
2. 상기 수입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의 증명 서류 내용 중 젤라틴과 그 유도체의 출처가 포함되어야 함 (제조 원료, 껍질, 뼈 또는 물고기의 비늘 등)
3. 수입 알류 제품, 유제품 및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 제품의 범위는 <붙임>을 참조할 것

[붙임]

종류별	항 목	비고
알류 제품	세계관세기구(WCO) 제정한 국제상품 동일 분류 번호(HS code): (1) 겹질(鰓)을 가진 조류 알 신선 저장 또는 약한 상태(0407) (2) 겹질(鰓)을 제거한 조류 알 및 노른자위(신선, 건조, 짬, 삶기, 플라스틱 포장, 냉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저장, 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 포함여부에 상관없음(0408)) (3) 알흰자말림(350211) (4) 냉동알흰자, 기타 단백질류 제품, 기타흰자단백제품(350219)	왼쪽에 나열된 제품의 수입 규정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신청하고 수입 검사해야 함(F01)
유제품	세계관세기구(WCO) 제정한 국제상품 동일 분류 번호(HS code): (1) 유(乳) 및 크림, 무농축 무설탕 및 기타 무첨가(0401) (2) 유(乳) 및 크림, 농축, 설탕, 기타 첨가물 첨가(0402) (3) 낙유, 응고유(凝固乳) 및 크림, 산낙유(酸酪乳), 케피어 및 기타 발효나 산화된 제품 및 크림, 농축, 설탕, 기타 첨가제, 향료, 과일 및 견과류 코코아 첨가 여부와 상관없음(0403) (4) 유청(乳清), 농축 설탕, 기타 첨가물 첨가 여부와 상관없음, 기타 나열하지 않은 천연 유제품, 농축 설탕, 기타 첨가제 첨가 여부와 상관없음(0404) (5) 유제품의 유도체인 치즈 및 기타 유지, 유제품 스프레드(0405)	왼쪽에 나열된 제품의 수입 규정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신청하고 수입 검사해야 함(F01)

	(6) 치즈 및 커드 (0406) (7) 수입쿼터로 수입되는 액체유 제품 (응고 유제품 포함) (9806)	
젤라틴 및 그 유도체 기타 젤라틴과 소화단백질 및 그 유도체	세계관세기구 (WCO) 제정한 국제상품 통일 분류 번호 (HS code) : (1) 젤라틴 (3503.00.10.00-4) (2) 젤라틴 유도체 (3503.00.20.00-2) (3) 기타 젤라틴 속 제3501절의 카제인 글루 제외 (3503.00.90.90-8) (4) 소화단백질 (펩톤) 및 그 유도체 (3504.00.11.00-2)	

<시사점>

- 2017년 계란, 오리알 등 알류 내 피프로닐 (Fipronil) 검출 사건 이후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2018년 6월 27일부터 알류제품 내 피프로닐 잔류 기준을 0.01ppm이하로 규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상기에 해당하는 수입산 알류, 유제품 등의 제품에도 수출국 정부의 위생검사 증빙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위생검사를 엄격화 할 예정임. 한국산 알류는 현재 수입이 불가하나 유제품 및 제라틴 등 수입이 가능한 해당 제품은 對대만 수출 시 준비가 필요함

* 자료원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2018년 10월 29일 공고 / 2018년 6월 27일 공고) .